

2006. 4. 28.(금)

제12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

심사보고서

-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-

자치행정위원회

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1. 심사경과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회계과장 이춘호)

가. 제안사유

-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할 수 있도록 「지방재정법」에 규정된 공유재산 분야를 분리함은 물론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(공포 2005. 8. 4, 법률 7665호 시행일 '06. 1. 1) 및 같은법 시행령을 제정(대통령령 제19227호 2005. 12. 30, 시행일 '06. 1. 1)공포함에 따라, 조례 위임사항 개정과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과 불합리한 문구 및 조항을 개선·보완하고 정리하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-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변경(안 제5조 2항3~4호)
 《현 행》 대장가격 1천만원이하 ⇒ 《개 정》 대장가격 2천만원이하

 ※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상향조정

○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의 그 기산일 변경(안 제17조)

『현행』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.

『개정』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사용 시작일
기준으로 할 수 있다.

* 사용허가 기간일의 기준을 실제 사용일로 함.

- 법령개정에 따른 조항변경 및 공공시설의 정의가 명확치 않아 행정·보존 재산으로 변경(안 제22조)
 - 《현 행》 공공시설의 위탁관리
 - 《개 정》 행정·보존 재산의 위탁 관리
- 대부자에 대한 연고권을 배제함으로써 차후 매각등으로 인한 분쟁소지 방지 (안 제24조)
-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대부·매각 대상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의 정확성을 기함.(안 제27조)
- 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부과를 사용 용도별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업무의 기준을 명확히 함.(안 제28조)
-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편리를 위하여 건축물 신축시 공용면적 20~40%인 것을 감안하여 공유건물 대부의 공용면적비율을 30% 일률적으로 적용(안 제31조)
- 영 제21조에서 규정한 사용·대부료의 조정범위 설정과 특례적용시 사용·대부까지의 포함하여 사용·대부자의 부담경감(안 제34조)
-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명확성 추구와 각종 공공사업의 원활 및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부담 경감(안 제38조)
- 토지매입비 개념 정리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 감면규정을 대통령령의 법률근거 미비로 삭제함.
 - (안 제39조) 《 현행 》 ② ~ ⑥ ⇒ 《 개정 》 ②~⑥ 삭제
- 수의매각 대상건물을 명확하게 하고 '81. 4. 30이전 건물 소유자에 대한 토지 매각면적 개선(주거용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면적 규모로 확대)(안 제40조)
 - *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
 - 《현 행》 시의 동지역 300제곱미터 이하, 시의 읍·면지역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
 - 《개 정》 시의 동지역 500제곱미터 이하, 시의 읍·면지역 1,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

- 불법사용에 따른 사전 안내와 의견제시 기회부여로 권리 침해 예방 및 변상금 분할 납부로 주민 경제적 부담 경감(안 제62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후준)

-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,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새로이 법을 제정하고 시행령이 공포되어('06. 1. 12) 충청북도로부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관한 개정조례 표준안이 송부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
- 표준안과 비교검토 결과, 표준안의 범위내에서 우리시의 형편에 맞게 조정되었다고 사료되며, 입법예고의 절차를 거쳐 시정조정위원회 의결된 사항으로 법규적 하자는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답변 요지

가. 질의요지

- 금번 개정조례안의 제 31조 4항에 보면 공용건물 대부의 공용면적 비율을 30%로 일률 적용한 이유는 ? (최종섭의원)

나. 답변요지 (회계과장 이춘호)

- 기존 건축물 신축시 공용면적 20~40%인 것을 감안할때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20%의 적용비율 차이로 인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용건물 대부의 공용면적 비율을 일률적으로 30%로 적용하는 것임

5. 소수의견

“없음”

6. 토론요지

“없 음”

7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-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. 끝.